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과 장 임태호	044-200-5550
		사무관 이강은	044-200-5526
		주무관 최용순	044-200-5527

I. 사업개요

1. 목 적

-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 시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보조대상사업) 제8호 어업 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 사업
- 「어선안전조업법」 제48조(재정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정지원) 제2호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의 보급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1년	22년	23년	24년		
어선 인명피해 (사망·실종)(명)	109*	89	83	78	118	'26.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연도별 집계 / 년

* '어선 중대사고 예방대책', 2030년까지 인명피해 50% 감축 목표에 따라 적극적인 성과 지표 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5,450	0	0	0
- 국 비	6,180	-	-	-
- 지방비	6,180	-	-	-
- 자부담	3,090	-	-	-

II.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선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어업인(다만, 제1항 나호 및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어업인 제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연안·구획어업 허가어선의 소유자
 -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소유자
 -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낙시어업의 신고된 어선의 소유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소유자
 - 어획물운반업, 건조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된 선박 등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소유자
- 선정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기준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선법」 제2조(정의)의 어선 소유자
 - * 제1항 나호 및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 「내수면어업법」 따른 내수면어업은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 중 팽창식 구멍조끼(목도리형·허리벨트형) 구매(구입) 보조 지원

5. 지원형태 및 지원품목

- 지원형태 : 일반회계(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지방비 보조율은 4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시군구)와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 ** 자부담 보조율 2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시군구), 수협중앙회(또는 회원조합), 어업인 단체 등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74-2. 구멍조끼(팽창식, 착용성향상형) 또는 88. 어선용 구멍의(팽창식 목도리형, 팽창식 허리벨트형) 형식승인을 받은 품목
 - * 단, 대형선망어선 본선, 기선권현망 본선 및 어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압식 팽창형 구멍조끼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팽창식 구멍조끼(목도리형·벨트형)중 지정하는 제품*의 구매비용에 대해 지원하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수 이내 지원

* '25. 5월 기준 목도리형 11종, 허리벨트형 10종

**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의 경우 척당 최대 2벌 까지 신청 가능

※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 등록제품 추가시 대상 제품이 늘어날 수 있음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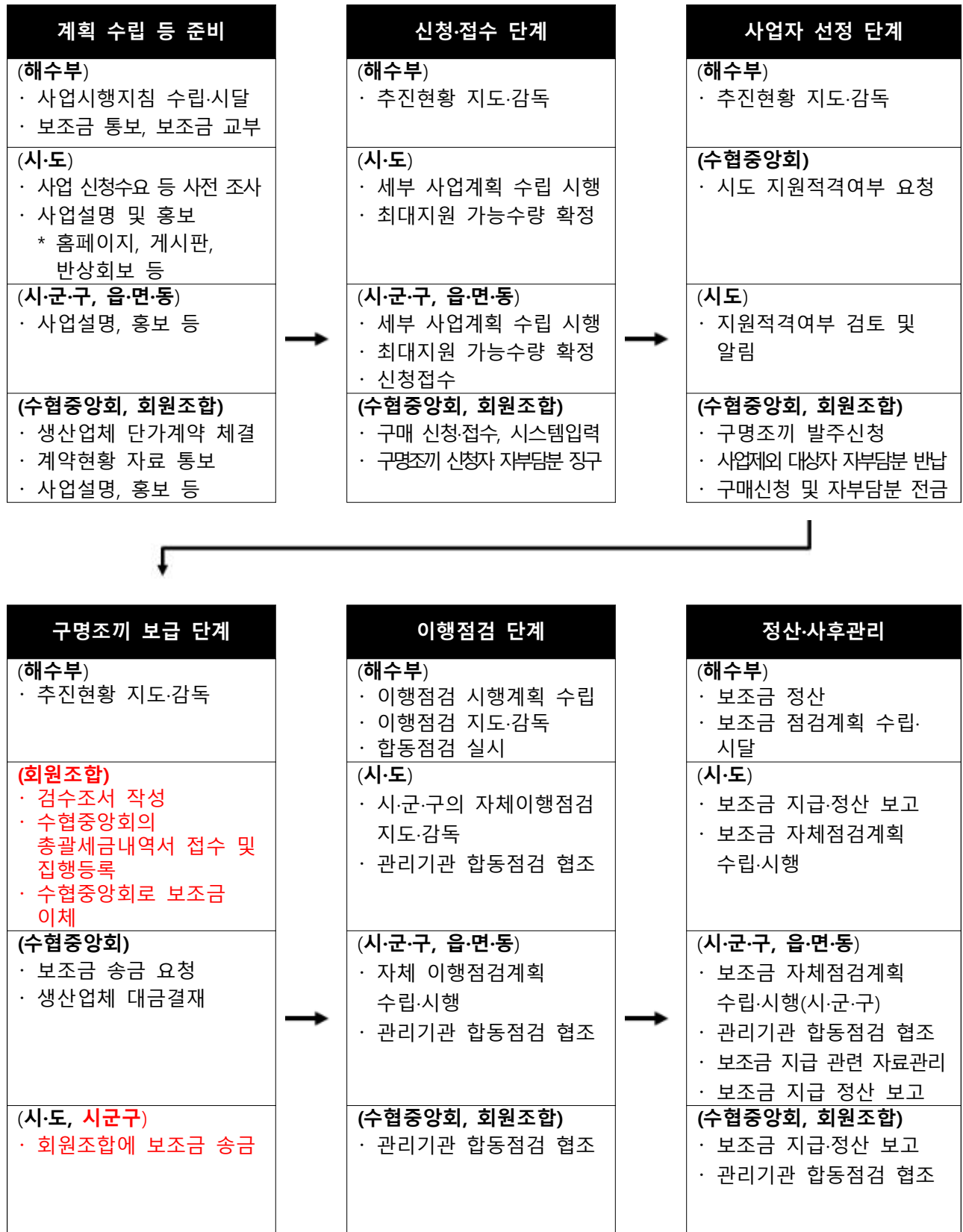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어선안전장비	장비·설비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된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가 정한 기간까지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해수부 내용연수로 관리 * 조달청, 해수부 「내용연수」 모두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등 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5월)
- 시·도에 보조금 임시 통보 및 확정 통보('25. 上)

시·도(시·군·구)

- 홍보계획 수립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에 게재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6월 ~ 11.15일 까지
 - * 사업별 포기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예비사업자 또는 추가 모집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중단없이 11.15일 까지로 하나 예산이 소진되거나 소진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신청률이 저조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접수기간 중 접수된 신청서는 수시로 회원조합으로 제출
- 시·도,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 회보, 시·군·구 홍보지 등에 공고·게재하는 등 홍보
- 수협 회원조합, 사업대상 지역 어촌계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수협중앙회(회원조합)

- 구명조끼 생산업체*와 구명조끼 보급 단가계약 체결(수협중앙회)
 - * 생산업체별 각 팽창식 목도리형 2종, 팽창식 허리벨트형 2종 참여
 - 단가 계약시 특약사항
 - * 구명조끼 외부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보급품” 명시
 - ** 구명조끼는 납품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생산 구명조끼
 - *** 납품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생산된 CO₂ 실린더 및 수분감지기
- 보급사업 참여 제품에 대한 계약현황 자료 통보(수협중앙회)
 - 통보대상 : 해양수산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회원조합
- 사업 진행중이라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어업용기자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바로 공동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에 통보
 - * 지자체로부터 어선설비 구매 등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고, 장비조달업무(수주·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지원
- 홍보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어업인 홍보·지도

2. 신청·접수 단계

해양수산부

- 추진상황 점검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 사업계획서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참여 대상 수량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수협중앙회 통보(대상수량을 확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님)

수협중앙회(회원조합)

- 구매신청서 등 관련서류 접수(시군구, 회원조합, 어선안전조업국) 및 통보(회원조합→수협중앙회)
 - 구매신청서 접수시 시·도(시·군·구)로부터 통보된 참여 대상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
 -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군구, 회원조합, 어선안전조업국은 사업신청서를 접수, 자부담 납부가 완료된 신청서는 회원조합에서 **수시로 취합**하여 전산에 입력 후 **매주 금요일** 까지 수협중앙회로 전산을 통해 제출
 - ** 구매신청서(구명조끼 상시 착용 서약서 및 재판매 금지 동의 내용 포함) 및 자부담분 동시 징구
 - *** 수협중앙회는 전산에서 취합된 신청현황을 **격주 금요일** 까지 시도에 지원적격여부(결격여부 포함)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는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공휴일제외) 지원적격여부를 수협중앙회에 회신하여야 함
- 신청서를 작성한 어업인의 자부담 징구

어업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직접, 우편,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협중앙회(회원조합)에 자기부담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 안전조업교육시 안내받은 경우 해당 어선안전조업국에 제출
- * 지자체의 우선순위 및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며,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거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숙지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수협중앙회에서 통보된 신청현황을 검토한 후 예산사정 및 결격여부에 따라 신청자 순으로 지원하되 예산사정 상 경합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지원적격여부는 수협중앙회의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신(주말, 공휴일 제외)
- 가. 1순위 :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 어선(허가어업)
- 나. 2순위 : 1순위 외 연근해어선(허가어업)
- 다. 3순위 : 관리선 사용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 중 출입항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 실적이 있는 어선
- 라. 4순위 : 관리선 사용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 중 출입항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 실적이 없는 어선
- 마. 5순위 :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어선 및 기타 어선
- 시도(시군구)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였다더라도 접수는 취소되며 유선 또는 SNS 등을 통해 취소내용을 통보해야 함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대상자 명단, 지원금액 등 구명조끼 배부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내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회원조합 수협조합장에게 통보(제출)

수협중앙회(회원조합)

- 수협 회원조합에서는 자부담분이 납부 완료된 신청서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에 구매신청 및 자부담금 전금

- 지자체로부터 보급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신청자에 대한 자부담분을 어업인에게 반납

4. 구명조끼 보급 단계

《보조금 지급 단계》

- 회원조합은 발주확정된 구명조끼 수량에 상응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시군구에 교부요청한다.
 - * 수협중앙회는 생산업체에 구명조끼 제작 발주시마다 회원조합별 발주확정금액을 회원조합,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 시도, 시군구는 회원조합의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조금을 e나라도움에 예치한다.
- 회원조합은 생산업체에서 납품된 구명조끼를 검수(검인수조서 작성)하고 즉시 구매발주시스템에 검수일자를 입력하여 수협중앙회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
- 수협중앙회는 구매발주시스템에 검수완료된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월 1회 이상 발급하여 회원조합에 총괄 세금계산서 내역을 문서로 제출한다.
- 회원조합은 수협중앙회의 문서와 검인수조서를 e나라도움에 입력하여 집행 등록하고 물품대금을 수협중앙회로 이체한다.
- 수협중앙회는 물품대금을 월 1회 이상 업체로 입금한다.
 - * 확정된 명단의 모든 보조금은 12.24일까지 입금을 마무리 하여야 함

《구명조끼 보급》

- 회원조합은 검수확인된 구명조끼를 어업인에게 배부하며 배부확인증을 작성한다.
 - * 배부확인증은 어업인, 선박명, 수량, 금액 등 회원조합의 구매발주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자료 등을 활용하며 현장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간소화 한다. 필요시 수협중앙회의 통일서식 활용

- 납품지연, 단순변심 등에 따른 취소는 불가능하며 물품불량일 경우 동일제품으로 교환한다.
 - * 단, 업체에서 납품지연에 따른 환불에 동의할 경우 취소 가능
 - ** 어업인이 물품 수령전 어업인 사망, 어선매매에 따른 취소시 환불 가능
- 회원조합의 물품보관 장소 등 여건상 배부가 곤란할시 회원조합-생산업체-수협중앙회-시군구 등 관계자와 협의후 자체적으로 배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보조금 정산 단계》

- 회원조합은 어업인이 수령한 배부확인증과 검인수조서 등 증빙자료를 정산 보고서와 함께 시군구에 문서로 제출한다.
 - * 시군구에서는 회원조합 정산서 작성의 편의성 등을 고려, 필요서류를 최소화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 즉시 수협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수협중앙회(회원조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등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매월), 사업신청, 장비조달 업무, 어업인 홍보·지도 등 적극 지원
- 구명조끼에 선명 및 선적항 표시* 확인·계도, 구명조끼 상시착용, 소모품 교체 방법 등 교육 실시
 - * 어선설비기준 [별표4] 구명기구 및 신호장치의 표시사항(제63조제2항 관련), 구명조끼 표시 사항 : 선명 및 선적항

6. 정산·사후관리 단계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 제한

시·도(시·군·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유사사업(어선안전장비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보조금법」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 반납 조치

시·도(시·군·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수협중앙회(회원조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안내 및 환급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치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법령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16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라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비·설비	조달청 「내용연수」에 등록된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가 정한 기간까지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매각 등),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에 사용 불가
	조달청, 해수부 「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IV. 2025년도 사업신청 기타사항

- 시·도는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25.上)
- 2025년도 정부예산안 시·도에 통보(‘25.上)
 - 시·도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지방비 확보 추진
- 개정지침은 개정즉시 시행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2)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서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 번 호 -	
	주 소					
	종사경력	년				
신 청 내 용	구명조끼 종류	목도리형 / 허리벨트형				
	모델명					
	신청수량(벌)					
	어선명 (어선번호)	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				
		종 류	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원)	계	국 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환급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p>동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구명조끼에 대하여 재판매를 금지하고, 조업중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한 상태로 조업할 것을 서약 하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1.
- 2.
- 3.

신청자 주 소:
성명(명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수신: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 사업내용:

예산과목: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제4호서식】 어업인 → 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3.13.>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15일

환급 대상자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① 구입가액	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합계 (①+②)
합계					
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임·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였으니 같은 조 제3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급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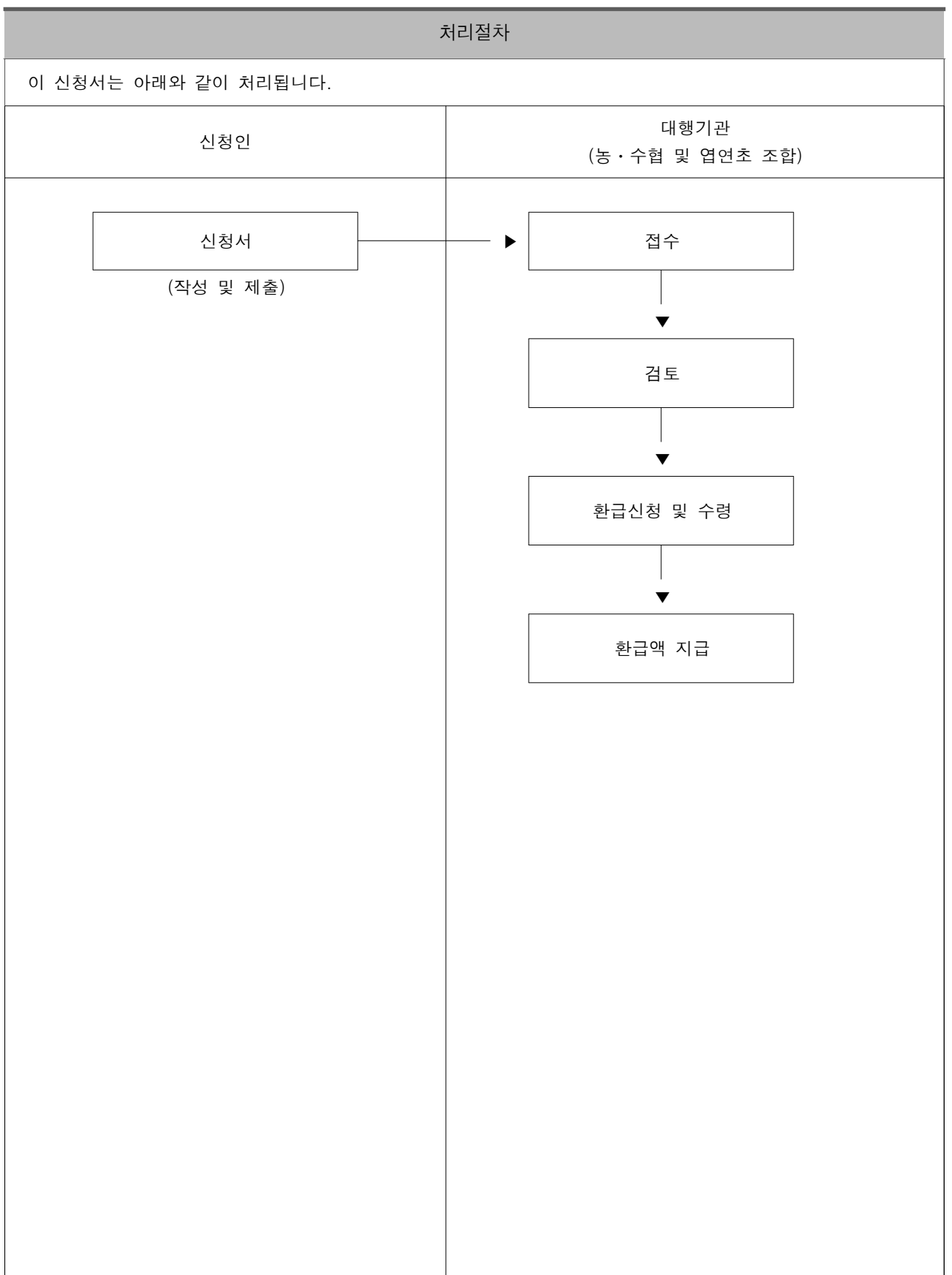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 다음의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제5호서식】 조합 → 세무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18.>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년 기)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환급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①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② 구입가액	③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④ 합계 (②+③)
합 계					
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3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환급대행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1.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환급신청명세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 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직 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 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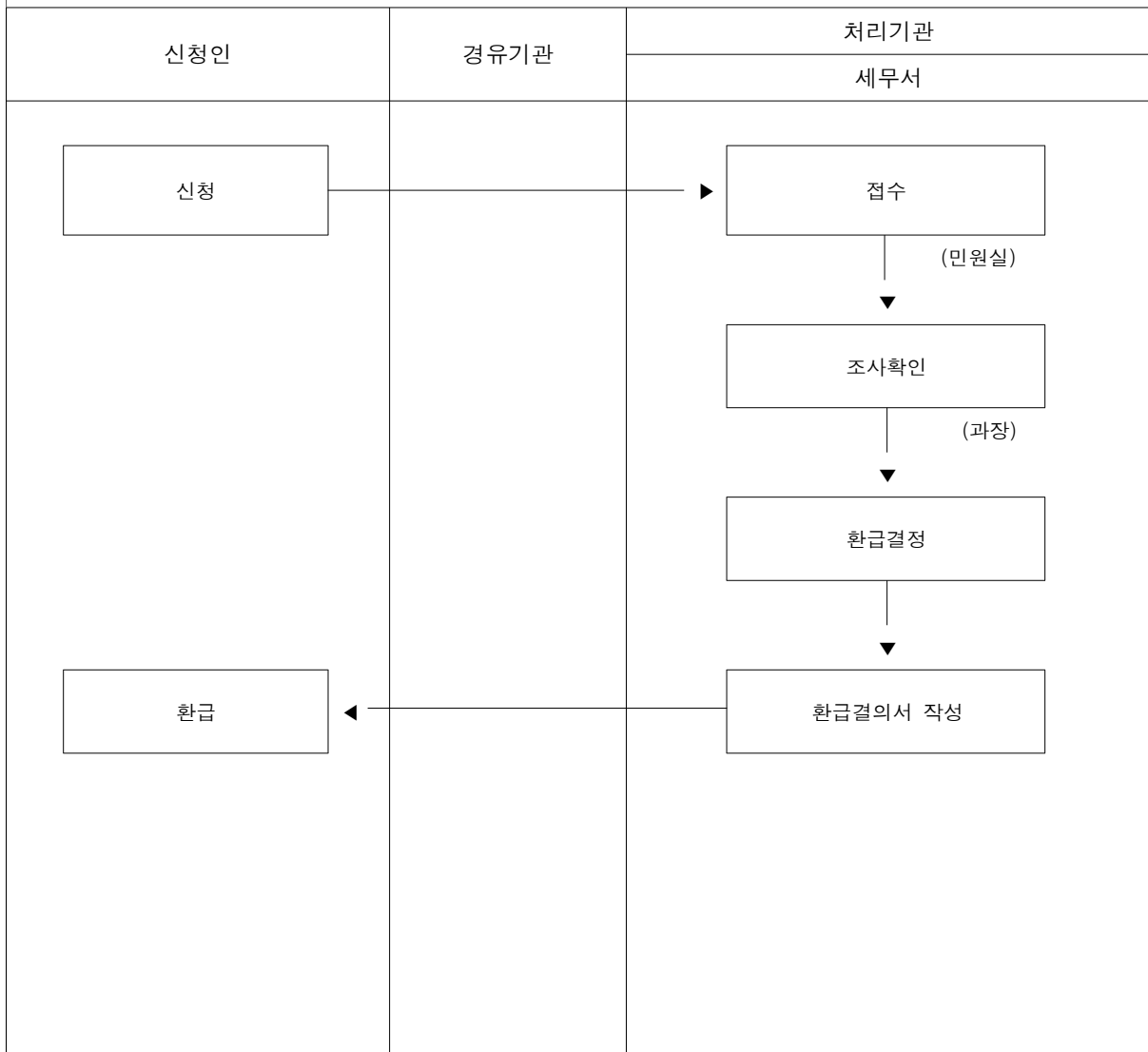
작성방법

이 신청서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년 기)란은 매분기를 각 기수로 합니다(1/4분기→제1기, 2/4분기→제2기, 3/4분기→제3기, 4/4분기→제4기).
2. ※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① 대상기간란은 농·임·어업용기자재 환급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4. 환급대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란 중 ② 구입가액, ③ 환급신청액(부가가치세), ④ 합계란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6호서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3.13.>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 (년 기)

일련 번호	환급자		구입내역			환급신청액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건수	공급가액	세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